

2022학년도 3월 신입학
재외국민(새터민) 모집안내

수시모집
정시모집 「가」, 「다」 군



성결대학교
SUNGKYUL UNIVERSITY

모집학부(과) 및 인원

구 분	대 학	학부(과)	입학정원	모집인원	
				재외국민 (2%이내)	전 교육과정 이수자 북한이탈주민
주 간	신학대학	신학과	50	24 (미지정)	모집인원 제한없음
		기독교교육상담학과	40		
		문화선교학과	30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35		
		영어영문학과	40		
		중어중문학과	40		
	사회과학대학	국제개발협력학과	40		
		사회복지학과	60		
		행정학과	40		
	글로벌경영 기술대학	관광개발학과	40		
		경영학과	40		
		글로벌물류학부 (유통물류 / 국제물류전공)	75		
		산업경영공학과	60		
	IT 공과대학	컴퓨터공학과	70		
		정보통신공학과	70		
		미디어소프트웨어학과	70		
		도시디자인정보공학과	35		
	예술대학	음악학부 (성악/피아노 전공)	38		
		연극영화학부 (연기예술/영화영상 전공)	45		
		뷰티디자인학과	40		
		공연음악예술학부 (실용음악/현대교회음악 전공)	30		
야 간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40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40		
		행정학과	40		
	글로벌경영 기술대학	경영학과	40		

※ 입학정원의 2%, 학부(과) 모집단위별로 10%의 인원을 모집합니다.

※ 수시에서 모집인원이 미달될 경우 미달 인원만큼 정시모집에서 선발합니다.

전형일정

구 분		일 시	장 소	비 고
수시모집	원서접수	2021. 7. 5.(월) - 7. 9.(금) 17:00	입학홍보과 (인터넷접수)	
	서류접수	2021. 7. 5.(월) - 7. 23.(금) 16:00	입학홍보과 (우편 접수만 가능)	
	합격자발표	2021. 10. 28.(목) 전후	본교 홈페이지	
	수시에치금 등록	2021. 12. 18.(토) ~ 12. 21.(화) 16:00	기업은행 전국지점	
	잔여 등록금 납부	2022. 2. 9.(수) ~ 2. 11.(금) 16:00		
정시모집	원서접수	2021. 12. 30.(목) ~ 2022. 1. 3.(월) 17:00	입학홍보과 (방문접수)	입학지원서는 성결대학교 홈페이지 입시자료실에서 다운받아 사용
	(추가)서류접수	2021. 12. 30.(목) ~ 2022. 1. 7.(금) 16:00	입학관리과 (방문접수)	
	합격자발표	추후 공지	본교 홈페이지	
	등록	2022. 2. 9.(수) ~ 2. 11.(금) 16:00	기업은행 전국지점	

※ 입시원서 및 제반 서류는 원서접수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준비하여 접수기간 내에 차질 없이 제출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자격

1. 전형별 지원자격

가. 우리나라 초·중·고등교육(12년)에 상응하는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아래의 자격을 충족하는 자

※ 졸업자격 인정기준 시점은 2022년 2월 28일로 함. 단, 해당국의 학제상 학기 개시일이 1개월 늦은 국가(일본 등)는 1개월의 재학 예정기간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전형명	법령구분	지원자격
재외국민 (입학정원 2% 이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	해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한 자
전 교육과정 이수자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7호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귀화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
북한이탈주민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로서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거 동등 이상 학력을 취득한 자

2. 지원자격에 따른 부모 및 학생의 세부 지원자격

가. 재외국민(입학정원 2% 이내)

구 분	세부 지원자격
해외근무자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이상의 해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u>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해외에 체류한 자</u> ※ 영주권이 있는 경우라도 반드시 해외에서 재직(현지취업 및 자영업 포함)해야 합니다. ※ 해외선교사의 경우 (파송장 아닌) 교회재단에서 발행한 재직증명서(해외 파견기간 명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외근무자 자녀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3년(1,095일)이상을 해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u>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u> 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해외재학기간	<u>1.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u> -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u>2.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u> -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해외체류일수 조건	<u>1.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u> -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해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u>2.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u> -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해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u>3.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 절사</u>

구 분	내 용
해외재학기간	• 고교과정 1개 학년 포함 중·고교 과정 3년 이상
해외체류기간	• 학생: 학생 해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3/4 이상 • 부모: 학생 해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2/3 이상
해외근무자 재직기간	-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이상의 해외근무/사업/영업

00
※ 외국으로 파견되어 상근하는 경우에 국한되며, 단기근무형식의 교육, 연수, 출장 등의 목적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자는 제외됩니다.
※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의 학력인정방법은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자격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국내 검정고시는 인정함)
※ 해외발급 서류(아포스티유 확인서, 영사확인 서류 등)도 반드시 원서접수 시점(서류제출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나. 전 교육과정 이수자 · 북한이탈주민(입학정원 제한 없음)

구 분	세부 지원자격													
전 교육과정 이수자	1. 해외 1개국 내 학제가 동일한 학교에서 초·중·고 전 과정을 이수한 자 - 해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국내 초·중등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합니다. - 해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방학, 해외 학교 및 해당 국가에서 정한 휴일에 국내에 임시로 체류하는 경우에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합니다. - 해외의 한 국가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이수 연한이 12년이 되지 않더라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합니다. 2. 해외에서 학제가 다른 2개 학교 이상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table><tr><th>학년제</th><th>인정여부 및 인정조건</th><th>비 고</th></tr><tr><td>10학년제 이하</td><td>미 인정</td><td rowspan="3">단,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만큼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td></tr><tr><td>11학년제</td><td>초·중등 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 단, 2개국 이상에서 11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해야 인정</td></tr><tr><td>12학년제</td><td></td></tr><tr><td>13학년제</td><td>10학년~12학년 또는 11학년~13학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td><td></td></tr></table> * 부족한 학교교육과정 : 당해국 학년제의 총 이수연수와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12년간의 차이 년 수 - 단, 학제가 다른 2개 학교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편입학하는 과정에서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누락된 경우 1학기(6개월) 이내에서 인정합니다.	학년제	인정여부 및 인정조건	비 고	10학년제 이하	미 인정	단,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만큼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	11학년제	초·중등 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 단, 2개국 이상에서 11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해야 인정	12학년제		13학년제	10학년~12학년 또는 11학년~13학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학년제	인정여부 및 인정조건	비 고											
	10학년제 이하	미 인정	단,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만큼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											
	11학년제	초·중등 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 단, 2개국 이상에서 11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해야 인정												
12학년제														
13학년제	10학년~12학년 또는 11학년~13학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북한이탈주민	1. 초·중등 교육법시행령에 의해 교육감이 학력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 우리나라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북한이탈주민 ※ 국내외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 검정고시 출신자 등 본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지원 자격이 있다고 판단한 자													

지원자격 심사 관련 공통 안내사항

1. 해외재학기간 산정기준

가. 전체 이수학기, 월반 및 조기 졸업제도

- (1) 부정·편법·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학제(12년 총 24학기)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제 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총 23학기, 11년 6개월 이상 충족)
- (2)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전·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나. 학기 중복

- (1)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 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단 학제 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복수 발생 인정).
 - 누락된 학기는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2) 2개 학기 이상 연속 중복 학기의 경우 누락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3) 중복 학기 등 지원자격 검토 시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정·편법·악용 사례로 판명될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시1) 중복과 관련하여 지원자격 충족 사례(총 23학기 인정으로 충족)

[D: 국내학교, A: 외국학교]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재학 기간	D	D	D	D					D	D	D	D	D				D	D	D					
				A	A	A	A	누락					A	A	A	A	누락				누락	A	A	A

중복학기 G2-2로 G4-2 대체 가능

중복학기 G7-1로 G9-1 대체 가능

G11-1 학제차이로 인한 누락으로 인정

예시2) 중복과 관련하여 지원자격 미충족 사례

[D: 국내학교, A: 외국학교]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재학 기간	D	D	D	D	D					D	D	D	D				D	D	D					
				A	A	A	A	누락	누락				A	A	A	A	누락				누락	A	A	A

중복학기 G2-2~G3-1 중 한 개 학기만 G4-2~G5-1 중 한 개 학기로 대체 가능

중복학기 G7-1로 G9-1 대체 가능

G11-1 학제차이로 인한 누락으로 인정

다. 기타

- (1) 해당 학기에 성적 또는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만 재학기간으로 인정합니다.
- (2) 그 외 언급되지 않은 특이 사항은 본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합니다.

2. 해외근무기간 인정기준

- 가. 해외근무자(부모 중 1인 이상)는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 해외 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해외에 체류하며 근무해야 합니다.
- 나. 해외근무자(부모 중 1인 이상)의 해외근무기간[통산 3년(1,095일) 이상] 내에 학생의 재학기간(학생의 해외재학기간 인정기준을 충족한 6개 학기 재학기간)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해외근무자가 이혼한 경우

가. 지원자격 해당 기간 중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혼한 경우

- 이혼 전: 부모와 학생 모두가 지원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이혼 후: 학생과 해외근무자(부모 중 1명)만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됨
(단, 재혼한 경우에는 부, 모 모두 자격을 충족해야 함)

나. 지원 자격 해당기간 시작 이전에 이혼한 경우: 학생과 해외근무자만 지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됨
(단, 재혼한 경우에는 부, 모 모두 자격을 충족해야 함)

다. 부모가 이혼했을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학생 기준 기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해외 근무/사업/영업 중에 부, 모가 해당 지원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원자격 요건이 변경된 경우

- 가. 이전 지원자격 요건과 변경된 지원자격 요건을 합산하여 부모와 학생 모두가 근무/재학/체류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해외근무자 근무 유형에 해당하는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함).

예시) 현지 취업자(2017.8.1.~2020.8.30.) + 현지 자영업자(2020.9.1.~2021.7.31.)

3. 외국학교 재학인정 기준

- 가. 국내가 아닌 외국에 소재한 학교만 인정하고,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나. 해당국 교육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정규학력이 인정되는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만 인정합니다. 유치원 과정, 어학 연수 목적의 교육기관, 국내·외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의 학력인정방법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 정규 과정과 어학과정을 동시에 이수하여, 해당학기 정규과정 성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외국학교 재학으로 인정함)
- 다.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만 인정합니다. (단, 본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근무국가의 지역상황 (전쟁,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제3국 수학을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제3국 수학사유서 제출)
- 라. 해외 고교과정에 재학한 후에 국내 고등학교 과정으로 신입학하여 국내 고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지원자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4. 외국학교 교육과정 인정 기준

- 가. 학년 배정은 외국학교 전 학년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의 재 학기간을 중심으로 계산하며, 우리나라 학제 (12학년제, 1개 학년 = 2학기제)에 맞추어 계산함(단, 외국에서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예외)

교육과정	12학년제 이하	13학년제
초등 학교	1~6학년 과정	2학년~7학년 과정
중학교	7~9학년 과정	8학년~10학년 과정
고등학교	10~12학년 과정	11학년~13학년 과정

※ 11학년제 이하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마쳤을 경우, 12학년 대비 부족한 기간만큼 해당국 대학 등에서 이수해야 고등학교 졸업자격을 인정함
나. 초·중·고 전 교육과정 이수자: 상단의 세부 지원자격 참고

전형 방법

- 1. 서류평가 100%로 학생을 선발함
- 2. 지원자의 학력이 적절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모집인원에 상관없이 선발하지 않음

지원 절차 및 전형방법

1. 지원절차

인터넷 접수 → 증빙서류 제출 → 자격요건 및 서류심사(본 대학교) → 합격자 발표 → 등록

※ 정시모집은 방문접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2. 전형과정

- 가. 본 대학은 지원자의 지원 서류로 자격요건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지원자에게 통보합니다.
- 나. 지원자의 제출서류는 접수기간 마지막 날까지 본 대학교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 다. 본 대학의 지원자는 서류심사에 대한 합격통보를 받은 후, 기간 내에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제출서류

1. 제출서류 목록

No.	제출서류	해외 근무자의 자녀			전 교육과정 이수자		북한이탈주민	비고
		해외파견 재직자	현지 취업자	현지 자영업자	재외국민	결혼이주민		
1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	●	●	●	●	●	●	인터넷접수 : 접수 후 출력 방문접수 : 입학홈페이지 다운 후 작성
2	자기소개서(본교소정양식)	●	●	●	●	●	●	인터넷접수 : 접수 후 출력 방문접수 : 입학홈페이지 다운 후 작성
3	학력조회 동의서	●	●	●	●	●		인터넷접수 : 접수 후 출력 방문접수 : 입학홈페이지 다운 후 작성
4	재학기간 및 체류기간 심사표	●	●	●	●	●		인터넷접수 : 접수 후 출력 방문접수 : 입학홈페이지 다운 후 작성
5	외국학교 이수 현황표	●	●	●	●	●		인터넷접수 : 접수 후 출력 방문접수 : 입학홈페이지 다운 후 작성
6	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	●	●	●	●	●		수학기간 표기 필수
7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	●	●	●	●	●		검정고시 학력은 인정되지 않음 국내고등학교 : 학생부 대체 가능
8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	●	●	●		
9	가족관계증명서(부모, 학생)	●	●	●				부모 이혼 시 친권자의 혼인관계증명서 및 학생 본인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10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 (부모, 학생)	● (부모, 학생)	● (부모, 학생)	● (학생)	● (학생)		
11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	● (부모, 학생)	● (부모, 학생)	● (부모, 학생)	● (학생)	● (학생)		
12	재외국민등록부등본	● (부모, 학생)	● (부모, 학생)	● (부모, 학생)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대체서류를 제출해야 함
13	여권 사본 (부모, 학생)	● (부모, 학생)	● (부모, 학생)	● (부모, 학생)	● (학생)	● (학생)		
14	보호자 재직증명서	●	●					외국 근무 경력기간 명기
15	해외지사설치인증서 (해외직접투자증명서)	●						국내 은행권 발급 (해외파견 공무원 제외)
16	외국정부발급 사업자등록증 또는 현지법인등기부등본		●	●				
17	해외 재직회사의 법인세 납부이력		●					
18	자영업자의 해외 세금납부증명서			●				
19	국적취득사실증명서					●		
20	혼인관계증명서					●		
21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본교소정양식)	●	●	●	●	●	●	입학홈페이지에서 다운 후 작성
22	북한 이탈 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시군구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담당관 발급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	
		학력인정증명서, 검정고시증명서, 국내고교졸업(예정)증명서 중 택1					○	학력인정증명서는 교육감이 학력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증 명서
							○	

※ 외국어(영어 제외)로 된 모든 서류는 공증을 받은 한글 번역본을 첨부해야 함

※ 해외 발급서류는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한국어나 영어로 작성되지 않은 서류는 공증 받은 번역본을 제출함 (단, 재외한국학교 발급 서류는 아포스티유 및 영사확인을 받지 않아도 됨)

※ 국내 발급 공문서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함. 단, 사본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원본을 지참하여 본교 입학홍보과에서 원본대조필을 받아야 합니다.

2. 서류 제출 유의사항

- 가. 제출 서류는 원칙적으로 원본이어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 발급기관(또는 해당국의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영사관) 또는 본교의 원본 대조를 필한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나. 한국어로 발급되지 아니한(외국에서 발행된) 모든 서류는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을 받거나 학교 소재국 영사관에서 '재외교육기관 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을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단, 우리 나라 교육부에서 재외교육기관으로 인정한 학교가 발급한 서류는 이를 생략할 수 있음)
- 다. 영문으로 발급된 서류는 공증 받은 한글 번역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라. 부모의 이혼, 사망, 동거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련증빙서류를 본교에 제출해야 합니다.
- 마. 고교졸업예정자인 경우 합격 후 졸업증명서를 2022년 2월 25일(금)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바. 제출서류 상의 이름이나 생년월일이 각각 다른 경우에는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사. 모든 지원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본교 양식)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아. 국외 체류 당시 재외국민 등록을 하지 않아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발급이 불가하거나 재외국민 등록 이전으로 인하여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의 해당국 최초 입국일 정보가 변경된 경우, 해당 내용을 본교 양식의 사유서에 기재하고 해당국 체류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비자 사본 등의 대체 문서 1부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유의 사항

- 1. 2022학년도 수시모집에서는 지원 횟수를 6회로 제한합니다. 원서접수 시간 순서상 6회를 초과한 접수는 취소 요청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
- 2. 이중국적 보유자는 내국인으로 보아 특례입학을 불허합니다.
- 3.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와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기관은 외국학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4. 국내 연락처와 국내 주소지를 반드시 기입해야 합니다. 기재한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성결대학교 입학홍보과에 반드시 통보하여야 하며, 변경된 연락처를 통보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가 감수합니다.
- 5. 자기소개서는 한국어로 작성해야 합니다.
- 6. 본 조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학특례입학 업무처리 편람과 본 대학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7. 입학 전형의 성적 및 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8. 복수지원 금지 및 이중등록 금지
 - 가. 2022학년도 3월 신입학 수시 재외국민 전형에 **최종 합격한 자**는 아래의 전형에 지원할 수 없으며 지원할 경우 모든 합격이 취소됩니다.
 - (1) 2022학년도 정시모집, 추가모집 및 2022학년도 9월 입학 수시모집(재외국민 전형 포함)
 - (2) 수시모집(재외국민과 외국인 전형 포함)에서 여러 대학에 중복 합격한 학생들은 반드시 한 대학교에만 등록(예치금 납부)하여야 하며, 이중 등록 시에는 등록한 모든 대학교의 합격이 취소됩니다.
- 9. 서류의 위조나 변조, 구비서류 미비 등 지원자격 미달자는 불합격 처리하며, 이러한 사실이 추후에 발견될 경우 입학이 허가된 후라도 합격 취소 또는 입학 취소 및 고발조치 합니다.

전형료

1. 입시 전형료: 100,000원

2. 전형료 환불규정

가. 지원자격 미달자, 단순 번심자는 전형료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단 아래의 사유에 한해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합니다.

- (1) 응시생의 착오로 인한 입학전형료 과납의 경우: 과납한 금액 전액
- (2)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입학전형료 전액
-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입학전형료 전액
- (4) 질병(사고)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입학전형료 전액
-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의를 거쳐 본교가 인정한 자에 한함.
- (5) 입학 전형 종료 후 입학전형 관련 손실·지출에 따른 잔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방문 또는 금융기관 계좌이체 방식으로 입학전형 응시생에게 반환합니다 (단, 입학전형료 반환금액이 금융기관 전산망 사용료 미만일 경우 반환하지 않습니다).

등록금 납부 안내

1. 수시모집 합격생은 수시 예치금 등록기간(2021. 12. 18.(토) - 12. 21.(화) 16시)에 등록확인예치금(300,000원)을 우선 납부하고, 등록금 확정 후 차액은 신입생 등록기간 (2022. 2. 9.(수) - 2. 11.(금))에 등록금을 완납해야 합니다.
2. 정시모집 합격생은 신입생 등록기간(2022. 2. 9.(수) - 2. 11.(금))에 등록금을 완납해야 합니다.

입학 안내

- 담당부서: 성결대학교 입학홍보과
- 연 락 처: 031-467-8288, 8965
- 주 소: (14097)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성결대학로 53